
안전보건교육 위탁기관 평가 매뉴얼

2017.



산안법 제31조

안전보건교육 위탁기관 평가지표

기 준	평 가 항 목	평 가 지 표	배점	취득점수
합 계			1,000	
A 운영체계	소 계		400	
	A.1 운영방침 및 업무관리체계	1.1 운영방침 및 운영표준의 수립	50	
		1.2 부서별, 개인별 업무분장 및 관리체계	50	
	A.2 인적자원 보유 및 교육훈련 (인적기준)	2.1 전문인력 추가 확보 여부	80	
		2.2 직원(내·외부) 교육·훈련 실시	80	
		2.3 교육장 안전관리 계획 및 비상시 대처방법의 적정성	40	
	A.3 시설·장비 보유 및 유지관리 (물적기준)	3.1 기준 이상의 시설 및 장비 보유 여부	50	
		3.2 등록 강의실 활용 여부	30	
		3.3 휴게공간 등 교육생 편의시설 보유여부	20	
	가 감 점 항목	A.4 포상 및 행정처분 실적		
		4.1 최근 2년 이내 산업안전보건 관련 기관 또는 보유 인력에 대한 포상 실적(대통령:5, 장관:3, 이사장:2)	+10	
		4.2 최근 2년 이내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(처분개월수별 -15점, 최대 -80점)	-15~-80	
		4.3 최근 2년 이내 시정조치·경고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(건별 -2점, 최대 -20점)	-2~-20	
B 업무성과	소 계		600	
	B.1 교육관리	1.1 교육실시 건수 및 활성화 노력	90	
		1.2 교육일정 변경 절차 준수 및 변경 일정 공지의 적정성	50	
		1.3 커뮤니티 또는 홈페이지 운영의 적정성	40	
		1.4 교재 및 교육목표의 적정성	60	
	B.2 교육생 관리	2.1 교육생 출결관리의 적정성	80	
		2.2 학급당 정원 및 교육생 업종 동질성	50	
		2.3 교육운영 실적관리 상태	20	
	B.3 고객 만족도	3.1 교육이수자 만족도	130	
	B.4 자체평가 및 개선 노력	4.1 교육프로그램 자체 평가 실시 여부	40	
		4.2 자체 평가에 의한 개선 실적	40	

A. 운영체제

A.1. 운영방침 및 업무관리체계 (100점)

세부평가 A.1.1	평가기준 (배점:50점)	점 수
총 계		
운영방침 및 운영표준의 수립 여부	연간 교육계획 수립의 적정성 (배점:50점)	
평 가 취 지	○ 합리적인 교육 수요 예측을 통한 연간 교육계획 수립 내용의 충실도 및 적극성 등을 고려하여 교육운영의 적정성 여부 등을 평가	
주요 착안사항	※ 교육기관 본사 평가 시 지부 및 출장소 실적 통합 평가 ○ 운영방침 및 운영표준의 수립여부는 연간 교육계획이 적정하게 수립*되었는지 문서화**된 서류(이하 서류)를 확인하여 평가 * 매년 2월('17년은 4월) 이내 수립한 교육계획에 한함 (연중 신규 등록기관 : 등록 후 1개월 이내) ** 일련번호를 포함하여 내부결재를 득한 문서, 이하 “문서”란 동일한 의미로 사용 ○ 연간 교육계획 수립의 적정성 여부는 아래의 등급기준에 따라 점수 산정 - 연간 교육계획 수립 시 아래 <표1> 필수 반영 사항 ①~⑤를 모두 반영한 경우 : 50점 연간 교육계획 수립 시 아래 <표1> 필수 반영 사항 ①~⑤ 중 1건을 미반영한 경우 : 30점 연간 교육계획 수립 시 아래 <표1> 필수 반영 사항 ①~⑤ 중 2건 이상을 미반영한 경우 : 10점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경우 : 0점 <표1> 필수 반영 사항 ① 교육 과정 명, 교육 대상(과정별 인원 포함) 및 목적 ② 연간 교육일정 : 월별 일정, 강사, 장소 및 시간 등 ③ 교육생 확보 방안(교육과정 홍보 방안 포함) ④ 교육내용 : 교육과정별 커리큘럼 및 교육 방법(강의식, 실습식 등) ⑤ 교육생 만족도 향상 방안	

A. 운영체계

A.1. 운영방침 및 업무관리체계 (100점)

세부평가 A.1.2		평가기준 (배점:50점)	점 수
총 계			
업무관리 체계	교육사업 업무관리체계의 적정성 (배점:50점)		
평 가 취 지			
○ 교육기관의 업무관리체계 따른 조직도 및 업무분장 등을 문서화하여 시행함으로써 교육기관 운영의 시스템화를 유도하기 위함			
주요 착안사항			
※ 교육기관 본사 평가 시 지부 및 출장소 실적 통합 평가			
○ 교육기관의 업무관리 체계는 교육기관의 조직도 및 업무분장 문서와 현장 확인을 통해 평가			
○ 교육기관 업무관리체계의 적정성은 아래의 등급기준에 따라 점수 산정			
- 교육사업 업무관리체계에 따라 교육 기관이 운영되며 아래 <표2> 미흡사항 ①~③에 해당하는 항목이 없을 경우 : 50점			
교육사업 업무관리체계에 따른 교육 기관 운영 시 아래 <표2> 미흡사항 ①~③에 해당하는 항목이 1건 있을 경우 : 30점			
교육사업 업무관리체계에 따른 교육 기관 운영 시 아래 <표2> 미흡사항 ①~③에 해당하는 항목이 2건 있을 경우 : 10점			
교육사업 업무관리체계가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 : 0점			
※ 등록 기준상의 자격기준에 맞는 인력이 실제 근무하지 않는 경우 0점 처리하고 고용노동부에 행정조치 의뢰			
<표2> 미흡사항 ① 조직도 및 업무분장 사항을 문서화 하지 않은 경우 ② 업무분장상의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이 없을 경우 ③ 조직도상 인력이 실제 업무 분장 상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			

A. 운영체계

A.2. 인적자원 보유 및 교육훈련(인력기준) [200점]

세부평가 A.2.1	평가기준 (배점:80점)	점 수
총 계		
전문인력 추가 확보 여부	교육과목별 복수강사 확보여부 (배점:25점)	
	내부 교육 강사 강의비율 (배점:25점)	
	고급강사의 강의비율 (배점:30점)	
평 가 취 지		
○ 교육기관에 우수 교육강사 확보를 통한 교육의 품질향상을 유도하기 위한 평가		
주요 착안사항		
※ 교육기관 본사 평가 시 지부 및 출장소 실적 통합 평가		
○ 전문인력 추가 확보 여부는 각 과정별 강사현황에 대한 문서(조직도 및 업무분장 등) 및 자격증, 학위 취득증명서, 경력증명서 등의 서류를 확인하여 평가 ※ 문서화 되어있지 않을 경우 불인정		
○ 교육과목별 복수강사 확보 여부는 강사가 교육을 실시하지 못하는 상황 발생 시 대체할 수 있는 강사 확보여부를 아래의 산식에 따라 점수 산정 - 복수강사 확보 비율 점수 : $25점 \times \frac{\text{대체 강사수(명)}}{\text{연간 교육계획서상의 강사수(명)}} \times 1.5$ (점수 상한 25점) ※ 1명의 강사가 2개 과목을 담당할 경우 1명으로 인정		
○ 내부 교육강사 강의 비율은 안정적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내부강사의 강의 비율을 아래의 산식에 따라 점수 산정 - 내부 교육강사 강의 비율 점수 : $25점 \times \left(\frac{\text{내부강사 강의 시간}}{\text{교육기관 연간 교육시간}} + 0.5 \right)$ (점수 상한 25점) * 내부 교육강사 : 해당 교육기관과 정규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강사로 산안법 시행령 별표6의3 강사자격에 해당하는 자		
○ 고급강사*의 강의 비율은 교육의 품질 및 만족도 향상을 위해 전체 교육시간 중에 고급강사의 강의 비율을 아래의 산식에 따라 점수 산정 - 고급강사의 강의 비율 점수 : $30점 \times \left(\frac{\text{고급강사 강의 시간}}{\text{교육기관 연간 교육시간}} + 0.5 \right)$ (점수 상한 30점) * 고급강사 : 산안법 시행령 별표6의3의 인력기준 중 총괄책임자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		

A. 운영체제

A.2. 인적자원 보유 및 교육훈련(인력기준) [200점]

세부평가 A.2.2	평가기준 (배점:80점)	점 수
총 계		
직원 교육·훈련 실시	교육기관 직원에 대한 연간 교육·훈련계획 수립 및 시행 여부(배점:60점)	
	내·외부 교육 강사의 강의능력 향상 노력 여부 (배점:20점)	
평 가 취 지		
○ 교육기관의 직원(강사 및 과정운영 담당자)에 대한 교육·훈련계획 수립 및 이에 따른 교육·훈련 이행을 유도하여 기관별 강사 전문성 향상에 기여		
주요 착안사항		
※ 교육기관 본사 평가 시 지부 및 출장소 실적 통합 평가		
○ 교육기관 직원 교육·훈련 실시에 관한 사항은 교육·훈련 계획수립 문서, 강사 및 과정운영 담당자의 외부교육 이수증 등의 서류를 확인하여 평가		
○ 교육기관 직원(내·외부 강사 및 과정운영 담당자)에 대한 연간 교육·훈련계획 수립 및 시행 여부는 아래의 등급기준에 따라 점수 산정		
- 직원의 역량강화 활동* 참여 비율(시간)** 0.5 이상인 경우 : 60점		
직원의 역량강화 활동 참여 비율(시간) 0.4 이상 ~ 0.5 미만인 경우 : 45점		
직원의 역량강화 활동 참여 비율(시간) 0.3 이상 ~ 0.4 미만인 경우 : 30점		
직원의 역량강화 활동 참여 비율(시간) 0.2 이상 ~ 0.3 미만인 경우 : 15점		
직원의 역량강화 활동 참여 비율(시간) 0.2 미만인 경우 : 0점		
* 문서화된 연간 교육·훈련계획에 따라 수행한 안전보건관련 교육, 세미나, 학회 참석 등의 활동		
** 참여 비율(시간) : $\frac{\text{연간 직원별 역량강화 활동 총 시간}}{\text{직원수} \times 16 \text{시간}}$		
○ 내·외부 교육 강사에 대한 강의능력 향상 노력 여부는 아래의 등급기준에 따라 점수 산정		
- 강사 강의능력 향상 활동* 참여 비율(횟수)**이 0.5 이상인 경우 : 20점		
강사 강의능력 향상 활동 참여 비율(횟수)이 0.3 이상 ~ 0.5 미만인 경우 : 10점		
강사 강의능력 향상 활동 참여 실적이 없는 경우 : 0점		
* 문서화된 연간 교육·훈련계획 이외에 추가로 수행한 안전보건관련 교육, 세미나, 학회 참석 등의 활동		
** 참여 비율(횟수) : $\frac{\text{연간 강사별 강의능력 향상 활동 총 횟수}}{\text{강사 연인원}}$		

A. 운영체제

A.2. 인적자원 보유 및 교육훈련(인력기준) [200점]

세부평가 A.2.3	평가기준 (배점:40점)	점 수
총 계		
교육장 안전관리계획 및 비상시 대처방법의 적정성	교육생 안전 확보 및 보상을 위한 계획의 적정성 (배점:20점)	
	교육장 안전시설 구비 여부 (배점:20점)	
평 가 취 지		
○ 교육장 안전관리 계획 및 비상시 대처 방법의 적정성 평가를 통해 화재 발생 등 비상사태 시 교육생 안전 확보에 기여		
주요 착안사항		
○ 교육장 안전관리계획 및 비상시 대처방법의 적정성은 보험가입서류, 교육장 방문평가 시 현장 확인 및 교육장 안전점검일지 등의 서류를 확인하여 평가 ○ 위탁교육을 위해 설치한 지부, 출장소 등이 있을 경우 지부 및 출장소 중의 20% 미만 (소수점 이하 버림)을 임의로 선정(지부 및 출장소가 5개소 미만인 기관은 1개소 선정)하여 방문 평가하고 본사, 지부 및 출장소 각각의 평가 점수를 평균하여 최종 점수로 산정 * 지부 및 출장소가 1개인 경우 2개소 방문(본사 1개소, 지부 및 출장소 1개소) ○ 교육생 안전확보 및 보상을 위한 계획의 적정성은 아래 각각의 세부평가기준 점수 (세부 평가 기준별 조건에 부합할 경우 각각의 점수를 부여, 아닐 경우 0점)를 합산하여 산정 - 교육장 안전관리계획*이 문서화 되어있고 적정한 경우 : 10점 * 비상 대피경로 및 비상시 대처방안 게시 및 안내, 안전시설 및 용품 구비 방안 등 - 교육생 대상 손해배상 보험 가입여부 : 10점 ○ 교육장 안전시설 구비 여부는 아래 각각의 세부평가기준의 점수(세부 평가 기준별 조건에 부합할 경우 각각의 점수를 부여, 아닐 경우 0점)를 합산하여 산정 - 비상 대피경로 교육장내 게시 및 교육생 대상 안내 여부 : 8점 - 교육장 내 소방설비 및 장비(소화기, 스프링클러 등)가 갖추어져 있고 상시 사용이 가능한 경우 : 8점 - 상비약이나 응급조치에 필요한 기본적인 물품이 구비되어 있고 상시 사용이 가능한 경우 : 4점		

A. 운영체계

A.3. 시설·장비 보유 및 유지관리(물적기준) (100점)

세부평가 A.3.1	평가기준 (배점:50점)	점 수
총 계		
기준 이상의 시설 및 장비 보유 여부	실습·체험교육용 장비 보유 여부(배점:15점)	
	실습·체험교육용 보호구 보유 여부(배점:15점)	
	보유 장비의 활용실적(배점:15점)	
	보유장비 유지·관리상태의 적정성(배점:5점)	
평가 취 지		
○ 장비 보유 수준 및 활용실적 확인을 통해 실습 및 체험식 교육 확대 유도		
주요 착안사항		
○ 기준 이상의 시설·장비 보유여부는 실제 장비, 장비이력 관리대장, 장비사용대장, 교육결과보고서 등의 서류를 확인하여 평가 ○ 위탁교육을 위해 설치한 지부, 출장소 등이 있을 경우 지부 및 출장소 중의 20% 미만 (소수점 이하 버림)을 임의로 선정(지부 및 출장소가 5개소 미만인 기관은 1개소 선정)하여 방문 평가하고 본사, 지부 및 출장소 각각의 평가 점수를 평균하여 최종 점수로 산정 * 지부 및 출장소가 1개인 경우 2개소 방문(본사 1개소, 지부 및 출장소 1개소) ○ 실습·체험교육용* 장비 보유 여부는 아래의 등급 기준에 따라 점수 산정 - 실습·체험교육용 장비 보유 수량이 8종 이상 보유한 경우 : 15점 - 실습·체험교육용 장비 보유 수량이 5종 이상 ~ 8종 미만 보유한 경우 : 10점 - 실습·체험교육용 장비 보유 수량이 3종 이상 ~ 5종 미만 보유한 경우 : 5점 - 실습·체험교육용 장비 보유 수량이 3종 미만 보유한 경우 : 0점 * 산안법 시행령 별표6의5 제2호 다목 안전보건관리담당자용 교육장비로 교육생이 직접 조작 및 관찰이 가능한 것 ○ 기타 실습·체험교육용* 보호구 보유 여부는 아래의 등급기준에 따라 점수 산정 - 실습·체험교육용 보호구 보유 수량이 10종 이상 보유한 경우 : 15점 - 실습·체험교육용 보호구 보유 수량이 8종 이상 ~ 10종 미만 보유한 경우 : 10점 - 실습·체험교육용 보호구 보유 수량이 4종 이상 ~ 8종 미만 보유한 경우 : 5점 - 실습·체험교육용 보호구 보유 수량이 4종 미만 보유한 경우 : 0점 * 산안법 시행령 제28조제1항 3호에 해당하는 보호구로 교육생이 직접 조작 및 관찰이 가능한 것 ○ 보유장비(실습·체험교육용 장비 및 보호구) 활용실적은 아래의 산식에 따라 점수 산정 - 활용실적 점수 : $10점 \times \left(\frac{\text{보유 장비를 활용한 교육시간}^*}{\text{총 교육시간}} + 0.75 \right)$ (점수 상한 15점) * 1교시 교육시간의 50%이상을 보유장비를 사용하여 실습·체험교육을 실시한 경우 인정 ○ 보유 장비 유지·관리의 적정성은 아래의 등급기준에 따라 점수 산정 - 보유 장비가 모두 정상작동 되는 경우 : 5점 - 보유 장비 중 정상작동 되는 비율이 80% 이상 ~ 100% 미만인 경우 : 3점 - 보유 장비 중 정상작동 되는 비율이 80% 미만인 경우 : 0점		

실습·체험 교육용 장비 및 보호구 [산안법 제31조 안전보건교육 위탁기관 관련]

1. 「산안법 시행령 별표6의5 제2호 다목」 안전보건관리담당자용 교육장비 적용

- (1) 절연저항측정기
- (2) 접지저항측정기
- (3) 클램프메타
- (4) 검전기(저·고·특고압용일 것)
- (5) 소음측정기
- (6) 검지관 등 가스·증기농도 측정기 세트,
- (7) 직독식 유해가스농도측정기(산소농도의 측정도 가능할 것)
- (8) 심폐소생 인체모형
- (9) 혈압계
- (10) 혈당검사용 간이검사기
- (11) 혈중지질검사용 간이검사기

2. 「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8조제1항 3호」의 보호구 적용

- 가. 추락 및 감전 위험방지용 안전모
- 나. 안전화
- 다. 안전장갑
- 라. 방진마스크
- 마. 방독마스크
- 바. 송기마스크
- 사. 전동식 호흡보호구
- 아. 보호복
- 자. 안전대
- 차. 차광 및 비산물 위험방지용 보안경
- 카. 용접용 보안면
- 타. 방음용 귀마개 또는 귀덮개

A. 운영체계

A.3. 시설·장비 보유 및 유지관리(물적기준) (100점)

세부평가 A.3.2	평가기준 (배점:30점)	점 수
총 계		
등록 강의실 활용 여부	등록 강의실을 활용한 교육과정 운영의 적정성 (배점:30점)	
평 가 취 지		
○ 자체 강의실 활용을 통한 안정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유도		
주요 착안사항 ※ 교육기관 본사 평가 시 지부 및 출장소 실적 통합 평가		
○ 등록 강의실 활용 여부는 연간 교육계획서, 교육결과서 등 등록강의실 사용 실적 등 서류를 확인하여 평가		
○ 등록 강의실을 활용한 교육과정 운영의 적정성은 아래의 등급기준에 따라 점수 산정		
- 등록 강의실을 활용한 과정운영 비율*이 80% 이상인 경우 : 30점		
등록 강의실을 활용한 과정운영 비율이 60% 이상 ~ 80% 미만 인 경우 : 20점		
등록 강의실을 활용한 과정운영 비율이 60% 미만인 경우 : 10점		
연간 교육과정 운영횟수가 없을 경우(0) : 0점		
※ 연간 실시한 모든 교육을 기업맞춤형 방문교육**으로 운영하였을 경우는 20점으로 인정		
* 등록 강의실 활용 비율(%) : $\frac{\text{등록 강의실을 활용한 과정운영 횟수}}{\text{연간 교육과정 운영 횟수} - \text{기업맞춤형 방문교육횟수}} \times 100$		
** 기업맞춤형 방문교육 : 특정 기업과 계약에 따라 해당 기업 및 하청업체를 대상으로 전용의 교재 및 교안을 사용하여 맞춤형으로 실시하는 교육 (평가시 계약서, 교재 및 교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기업이름만 바꿔 사용하는 단순 교재 및 교안은 불인정)		

A. 운영체제

A.3. 시설·장비 보유 및 유지관리(물적기준) (100점)

세부평가 A.3.3	평가기준 (배점:20점)	점 수
총 계		
휴게 공간 등 교육생 편의시설 보유 여부	기본적인 편의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(배점:7점)	
	기본적인 편의시설 외에 추가적인 편의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(배점:7점)	
	교육생 주차 지원 가능 여부 (배점:6점)	
평 가 취 지		
○ 교육생 편의성 강화를 위한 시설확보 유도를 통해 고객만족도 향상에 기여		
주요 착안사항		
○ 교육생 편의시설 보유여부는 시설물(주차시설 포함) 사용 계약서 및 현장 방문 시 확인을 통해서 평가 ○ 위탁교육을 위해 설치한 지부, 출장소 등이 있을 경우 지부 및 출장소 중의 20% 미만 (소수점 이하 버림)을 임의로 선정(지부 및 출장소가 5개소 미만인 기관은 1개소 선정)하여 방문 평가하고 본사, 지부 및 출장소 각각의 평가 점수를 평균하여 최종 점수로 산정 * 지부 및 출장소가 1개인 경우 2개소 방문(본사 1개소, 지부 및 출장소 1개소) ○ 기본적인 편의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대한 평가는 아래의 모든 기준을 만족할 경우 7점 인정, 하나라도 만족하지 못할 경우 0점 - 휴게공간은 사무실 및 강의실과 별도 공간에 해당 교육기관 전용으로 확보 되어야 함 - 냉·난방 시설, 소파(의자), 탁자 및 냉온정수기 등이 있어야 함 ○ 기본적인 편의시설 외에 추가적인 편의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대한 평가는 휴게공간 내에 아래의 추가 편의시설 항목 중 4가지 이상을 보유했을 경우 7점 인정, 4가지 미만일 경우 0점 - 추가 편의시설 항목 : ① 고정식 휴대전화 충전기(2개 이상 인정), ② 커피 또는 음료 자판기(무료제공 다과 인정), ③ 무료 무선인터넷, ④ 인터넷PC, ⑤ TV, ⑥ 상시비치된 안전보건 관련 자료(책자, 월간지 등) ○ 교육생 주차 지원 가능 여부는 해당 교육장 반경 1km 이내에 10인 이상 무료 주차가 가능한 주차 시설을 보유(해당시설과 사용 계약이 된 경우 인정)한 경우 6점 인정, 그렇지 않을 경우 0점		

A. 운영체계

A.4. 포상 및 행정처분 실적 [가·감점 항목]

세부평가 A.4.1	평가기준 (배점 : 10점)	점 수
총 계		
포상 실적 (가점)	최근 2년 이내 기관 및 보유 인력에 대한 포상 실적 (배점:10점)	
평 가 취 지		
○ 교육기관의 포상 및 행정처분 실적에 대한 평가를 통해 품질향상 위한 동기부여		
주요 착안사항		
※ 교육기관 본사 평가 시 지부 및 출장소 실적 통합 평가		
○ 포상 실적은 표창장 실물, 포상 일련번호 등을 확인하여 평가		
○ 최근 2년 이내 기관 및 보유인력에 대한 포상 실적은 산업안전보건에 관련된 분야로 아래의 포상 훈격별 점수를 모두 합산하여 산정 (최대 10점)		
- 대통령 포상 : 5점 × 포상수		
- 고용노동부장관 포상 : 3점 × 포상수		
- 공단 이사장 포상 : 2점 × 포상수		
※ (예시) 교육기관이 대통령 포상을 받았고, 장관포상을 받은 직원 1명, 공단 이사장 포상을 받은 직원이 2명 있을 경우 : 총 12점(5점+3점+2점+2점) 이나 상한 10점 부여		

A. 운영체계

A.4. 포상 및 행정처분 실적 (가·감점 항목)

세부평가 A.4.2	평가기준 (배점 : -80점 ~ -15점)	점 수
총 계		
업무정지 처분 (감점)	최근 2년 이내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(배점: -80점 ~ -15점)	
평 가 취 지		
○ 교육기관의 포상 및 행정처분 실적에 대한 평가를 통해 품질향상 위한 동기부여		
주요 착안사항		
※ 교육기관 본사 평가 시 지부 및 출장소 실적 통합 평가		
○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사실에 대한 확인은 고용노동부의 행정처분 관련 실적 및 현장 평가 시 확인하여 평가		
○ 최근 2년 이내 업무정지 처분에 따른 감점 점수는 아래와 같이 산정		
- 업무정지 처분에 따른 점수 : -15점 × 처분 개월수(최대 감점 -80점)		
※ (예시) 교육기관이 업무정지 처분 6개월을 받은 경우 실제 감점은 -90점(-15점×6개월)이나 최대 감점 점수를 적용하여 -80점 부여		

A. 운영체제

A.4. 포상 및 행정처분 실적 (가·감점 항목)

세부평가 A.4.3	평가기준 (배점 : -2점 ~ -20점)	점 수
총 계		
시정조치·경고처분 (감점)	최근 2년 이내 시정조치·경고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(배점: -2점 ~ -20점)	
평 가 취 지		
○ 교육기관의 포상 및 행정처분 실적에 대한 평가를 통해 품질향상 위한 동기부여		
주요 착안사항		
※ 교육기관 본사 평가 시 지부 및 출장소 실적 통합 평가		
○ 시정조치·경고처분을 받은 사실에 대한 확인은 고용노동부의 행정처분 관련 실적 및 현장 평가 시 확인하여 평가		
○ 최근 2년 이내 시정조치·경고처분에 따른 감점 점수는 아래와 같이 산정		
- 시정조치·경고처분에 따른 점수 : -2점 × 처분 건수(최대 감점 -20점)		
※ (예시) 교육기관이 시정조치 6건, 경고처분 5건을 받았을 경우 실제 감점은 -22점 (-2점×11건)이나 최대 감점 점수를 적용하여 -20점 부여		

A. 운영체제

A.5. 종합화

세부평가 A.5.1	평가기준 (배점 : +15점)	점 수
총 계		
교육의 종합화·연계성 (가점)	교육기관의 교육과정 종합·연계 수준 (배점:15점)	
평 가 취 지		
○ 교육기관 자체 또는 기관별로 교육과정 종합·연계를 통해 다양한 교육서비스 제공		
주요 착안사항		
※ 교육기관 본사 평가 시 지부 및 출장소 실적 통합 평가		
○ 교육의 종합화·연계성은 교육기관 등록증, 연간교육계획서, 교육결과보고서 등의 서류를 확인하여 평가		
○ 교육기관의 교육과정 종합·연계 수준은 아래의 세부 평가기준별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정		
○ 교육기관 등록증, 연간교육계획서, 교육결과보고서 등의 문서를 확인하여 아래의 세부 평가기준별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정		
-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이외에 직무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: 3점		
-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이외에 건설기초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: 2점		
- 교육기관 컨소시엄* 구성을 통한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혼합과정을 운영하는 경우 : 10점		
* 기관 자체 또는 기관 간 컨소시엄을 통해 집체교육과 인터넷교육 연계 운영 등		

B. 업무성과

B.1. 교육관리 (240점)

세부평가 B.1.1	평가기준 (배점 : 90점)	점 수
총 계		
교육실시 건수 및 활성화 노력	연간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실시 횟수의 적정성 (배점:40점)	
	안전보건교육 수료인원 증가율(배점:20점)	
	고용보험 환급과정 운영 비율(배점:30점)	
평 가 취 지		
○ 교육기관의 교육실시 건수 및 활성화 노력 등 평가를 통해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교육 과정 운영 확대 유도		
주요 착안사항		
※ 교육기관 본사 평가 시 지부 및 출장소 실적 통합 평가		
○ 교육실시 건수 및 활성화 노력은 연간교육계획서, 교육결과보고서 등의 서류를 확인하여 평가		
○ 연간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실시 횟수의 적정성은 아래 등급기준에 따라 점수 산정		
-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실시 횟수가 매월 1회 이상 : 40점		
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실시 횟수가 매3개월 내 1회 이상 : 30점		
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실시 횟수가 매6개월 내 1회 이하 : 10점		
○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수료인원 증가율은 아래의 등급기준에 따라 점수 산정		
- 전년대비 교육 수료인원 증가율*이 5% 이상 : 20점		
전년대비 교육 수료인원 증가율이 2.5% 이상 ~ 5% 미만 : 10점		
전년대비 교육 수료인원 증가율이 0% 이상 ~ 2.5% 미만 : 5점		
전년대비 교육 수료인원 증가율이 0% 미만 : 0점		
* 증가율(%) : $\frac{\text{평가년도 총수료인원수} - \text{직전년도 총수료인원수}}{\text{직전년도 총수료인원수}} \times 100$		
※ '17년은 평가하지 않고 대상기관모두 20점 부여		
○ 고용보험 환급과정 운영 비율은 아래의 등급기준에 따라 점수 산정		
- 고용보험 환급과정 운영 비율*이 30% 이상 : 30점		
고용보험 환급과정 운영 비율이 20% 이상 ~ 30% 미만 : 20점		
고용보험 환급과정 운영 비율이 10% 이상 ~ 20% 미만 : 10점		
고용보험 환급과정 운영 비율이 10% 미만 : 0점		
※ 비율(%) : $\frac{\text{고용보험 환급과정 교육실시 횟수}}{\text{총 환급가능 교육과정 실시 횟수}} \times 100$		

B. 업무성과

B.1. 교육관리 (240점)

세부평가 B.1.2	평가기준 (배점 : 50점)	점 수
총 계		
교육일정 변경절차 준수 및 변경일정 공지의 적정성	교육일정 준수 여부 (배점:30점)	
	변경된 교육일정 공지의 적정성(배점:20점)	
평가 취지		
○ 교육일정 변경절차 준수 및 변경된 일정 공지의 적정성 평가를 통해 교육기관 교육과정 운영의 신뢰성 확보에 기여		
주요 착안사항		
※ 교육기관 본사 평가 시 지부 및 출장소 실적 통합 평가		
○ 교육일정 변경절차 준수 여부 및 변경일정 공지의 적정성은 연간교육계획, 교육결과보고서, 온·오프라인 공지 내역 등을 확인하여 평가		
○ 교육일정 준수 여부는 아래 등급기준에 따라 점수 산정		
- 교육일정 임의변경* 횟수가 0건인 경우 : 30점		
교육일정 임의변경 횟수가 1건인 경우 : 20점		
교육일정 임의변경 횟수가 2건인 경우 : 10점		
교육일정 임의변경 횟수가 3건 이상인 경우 : 0점		
* 임의변경 : 교육일정 변경 시 일정변경 사유 및 변경된 일정을 포함하여 온·오프라인으로 게시 및 배포하지 않은 경우를 말함		
○ 변경된 교육일정 공지의 적정성은 아래의 등급기준에 따라 점수 산정		
- 교육 시작일 전 5일 이상* 공지한 비율**이 80% 이상인 경우 : 20점		
교육 시작일 전 5일 이상 공지한 비율이 60% 이상 ~ 80% 미만인 경우 : 15점		
교육 시작일 전 5일 이상 공지한 비율이 50% 이상 ~ 60% 미만인 경우 : 10점		
교육 시작일 전 5일 이상 공지한 비율이 50% 미만인 경우 : 5점		
* 5일 : 교육 시작당일, 토, 일요일 및 공휴일 미포함 (대체 휴일은 포함)		
** 공지 비율 : $\frac{5일 이상 공지한 교육수}{총 일정 변경 교육수} \times 100$		

B. 업무성과

B.1. 교육관리 (240점)

세부평가 B.1.3	평가기준 (배점 : 40점)	점 수
총 계		
커뮤니티 또는 홈페이지 운영의 적정성	커뮤니티 또는 홈페이지 등 온라인으로 접근 가능한 채널을 운영하는 경우(배점:10점)	
	안전보건관련 자료를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경우 (배점:15점)	
	온라인상에서 질의·응답이 가능한 경우 (배점:15점)	
평 가 취 지		
○ 커뮤니티 또는 홈페이지 운영의 적정성을 평가하여 교육기관과 교육생간 환류(Feed Back)를 통한 교육과정 운영의 개선방안 도출에 기여		
주요 착안사항 ※ 교육기관 본사 평가 시 지부 및 출장소 실적 통합 평가		
○ 커뮤니티 또는 홈페이지 운영의 적정성은 해당 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커뮤니티 또는 홈페이지를 직접 확인하여 평가		
○ 커뮤니티 또는 홈페이지 등 온라인으로 접근 가능한 채널 운영 여부는 아래 세부평가기준에 모두 해당할 경우 10점, 아닐 경우 0점		
- 최근 6개월 이내 매 2개월마다 업데이트된 내용이 있을 경우		
- 홈페이지 또는 카페, 블로그 등 교육기관명으로 운영되는 온라인 채널(이하 온라인 채널)이 있을 경우		
○ 안전보건관련 자료를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경우는 아래 세부평가기준에 모두 해당할 경우 15점, 아닐 경우 0점		
- 온라인 채널을 통해 안전보건관련 자료 다운로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		
- 최근 6개월 이내 새로 등록된 자료가 있을 경우		
※ 다만 공단 홈페이지 자료실과 링크를 제공할 경우 15점 인정		
○ 온라인상 질의응답이 가능한 경우는 아래 세부평가기준에 모두 해당할 경우 15점, 아닐 경우 0점		
- 온라인 채널을 통해 교육생의 질의를 받고 응답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		
- 평가기간 중 교육생 질의에 대해 90%이상 답변을 하고 있는 경우		

B. 업무성과

B.1. 교육관리 (240점)

세부평가 B.1.4	평가기준 (배점 : 60점)	점 수
총 계		
교재 및 교육목표의 적정성	교육 목표에 적합한 주교재 사용여부 (배점:40점)	
	최신 산안법 개정사항을 반영한 교재사용여부 (배점:20점)	
평 가 취 지		
○ 교재 및 교육목표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평가를 통해 교육목적에 적합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유도하여 안전보건교육의 내실화에 기여		
주요 착안사항		
○ 교재 및 교육목표의 적정성은 자체 교재심의 결과, 연간교육계획, 교육결과서, 주교재 및 부교재 등 실물 책자 등을 확인하여 평가 ○ 위탁교육을 위해 설치한 지부, 출장소 등이 있을 경우 지부 및 출장소 중의 20% 미만 (소수점 이하 버림)을 임의로 선정(지부 및 출장소가 5개소 미만인 기관은 1개소 선정)하여 방문 평가하고 본사, 지부 및 출장소 각각의 평가 점수를 평균하여 최종 점수로 산정 * 지부 및 출장소가 1개인 경우 2개소 방문(본사 1개소, 지부 및 출장소 1개소) ○ 교육 목표에 적합한 주교재 사용여부는 아래의 등급기준에 따라 점수 산정 - 자체 교재심의를 통해 검증*을 거친 교재를 사용하는 경우 : 40점 - 공단 발간 자료(관리감독자용 모듈형교재)를 그대로 교재로 사용하는 경우 : 30점 - 자체적으로 제작한 교재(제본 형태)를 사용하는 경우 : 20점 - 별도의 교재가 없을 경우(단순 출력물을 활용할 경우도 해당) : 0점 * 교재심의 : 기관별 문서화된 자체 교재 심의 계획에 따라 심의위원(3명 이상) 검증을 받은 경우로 해당 교재별로 심의결과서(심의위원의 자필 서명 포함)가 있어야 함 ○ 최신 산안법 개정사항을 반영한 교재사용 여부는 아래의 등급기준에 따라 점수 산정 - 주교재 내용이 최신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을 경우 : 20점 - 주교재 내용이 최신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지 않았을 경우 : 0점		

B. 업무성과

B.2. 교육생 관리 (150점)

세부평가 B.2.1	평가기준 (배점 : 80점)	점 수
총 계		
교육생 출결관리의 적정성 (미 이수비율 등)	교육생의 출결관리 방법의 적정성(배점:30점)	
	교육생의 출결관리의 적정성(배점:50점)	
평 가 취 지		
○ 교육생 출결관리의 적정성 평가를 통해 이수 기준에 맞지 않는 교육생이 이수처리되지 않도록 하여 교육과정 운영의 투명성 제고에 기여		
주요 착안사항		
○ 교육생 출결관리의 적정성은 연간교육계획, 출석부(해당 과정 수강인원의 출결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) 및 교육결과 보고서 등의 서류를 확인하여 평가 ○ 위탁교육을 위해 설치한 지부, 출장소 등이 있을 경우 지부 및 출장소 중의 20% 미만 (소수점 이하 버림)을 임의로 선정(지부 및 출장소가 5개소 미만인 기관은 1개소 선정)하여 방문 평가하고 본사, 지부 및 출장소 각각의 평가 점수를 평균하여 최종 점수로 산정 * 지부 및 출장소가 1개인 경우 2개소 방문(본사 1개소, 지부 및 출장소 1개소) ○ 교육생 출결관리 방법의 적정성은 아래 각각의 세부평가기준 점수(세부 평가기준별 조건에 부합할 경우 각각의 점수를 부여, 아닐 경우 0점)를 합산하여 산정 - 과정별로 출결관리 방법이 지정되어 있고 문서화된 경우 : 20점 - 본인 확인 절차가 지정되어 있고 문서화된 경우 : 10점 ○ 교육생 출결관리의 적정성은 아래 각각의 세부평가기준의 점수(세부 평가기준별 조건에 부합할 경우 각각의 점수를 부여, 아닐 경우 0점)를 합산하여 산정 - 과정별 지정된 출결관리 방법에 따라 출결관리를 한 경우 : 10점 - 출결관리의 명확성은 아래의 등급 기준에 따라 점수 산정 : (최대 40점) · 동영상촬영, 지정좌석 운영 및 확인, 매시간 출석확인 등 교육생의 상시 출석을 명확하게 확인* 할 수 있는 경우 : 40점 * 각 교육 과정별 동영상 파일, 지정좌석 배치 및 담당자 확인 결과(매시간) 문서, 매시간 교육생 사인 등으로 확인 · 교육과정 중 2회 이상 출결 사항을 확인하는 경우 : 20점 · 교육과정 중 1회만 출결 사항을 확인하는 경우 : 10점 · 그 외 : 0점		

B. 업무성과

B.2. 교육생 관리 (150점)

세부평가 B.2.2	평가기준 (배점 : 50점)	점 수
총 계		
학급당 정원 및 교육생 업종 동질성 여부	교육과정별 학급정원의 적정성 여부 (배점:35점)	
	교육과정별 교육생 소속 사업장 업종 동질성 (배점:15점)	
평가 취 지		
○ 학급당 정원 적정성 및 교육과정별 교육생 소속 사업장 업종 동질성여부 평가를 통해 학습효과 증대에 기여		
주요 착안사항		
※ 교육기관 본사 평가 시 지부 및 출장소 실적 통합 평가		
○ 학급당 정원 및 교육생 업종 동질성 여부는 연간교육계획, 교육결과서 등의 서류를 확인하여 평가		
○ 교육과정별 학급정원의 적정성 여부는 아래 각각의 등급기준에 따라 점수 산정		
- 교육수료 인원이 60명을 초과하는 교육과정 비율*이 5% 미만 : 35점		
교육수료 인원이 60명을 초과하는 교육과정 비율이 5% 이상 ~ 10% 미만 : 25점		
교육수료 인원이 60명을 초과하는 교육과정 비율이 10% 이상 ~ 15% 미만 : 15점		
교육수료 인원이 60명을 초과하는 교육과정 비율이 15% 이상 ~ 20% 미만 : 5점		
교육수료 인원이 60명을 초과하는 교육과정 비율이 20% 이상 : 0점		
* 초과 교육과정 비율(%) : $\frac{\text{연간 총 교육과정 수} - 60 \text{명 이하 교육과정 수}}{\text{연간 총 교육과정 수}} \times 100$		
○ 교육과정별 교육생 소속 사업장 업종 동질성은 아래 각각의 등급기준에 따라 점수 산정		
- 이종업종 교육생 대상 교육과정* 운영 비율**이 10% 미만 : 15점		
이종업종 교육생 대상 교육과정 운영 비율이 10% 이상 ~ 20% 미만 : 10점		
이종업종 교육생 대상 교육과정 운영 비율이 20% 이상 ~ 30% 미만 : 5점		
이종업종 교육생 대상 교육과정 운영 비율이 30% 이상인 경우 : 0점		
* 제조업, 건설업 및 그 외의 업종(서비스, 기타 업종 등) 교육생을 혼합하여 교육하는 과정, 1개 교육과정 전체 교육생 중 이종업종 비율이 5%를 초과할 경우 해당(예. 총원 40명 교육과정 중 제조업 38명, 건설업 1명, 서비스업 1명일 경우 이종업종 비율 5%이하로 단일업종 교육으로 인정)		
** 교육생 비율(%) : $\frac{\text{연간 총 교육수료자 수} - \text{단일업종 교육수료자 수}}{\text{연간 총 교육수료자 수}} \times 100$		

B. 업무성과

B.2. 교육생 관리 (150점)

세부평가 B.2.3	평가기준 (배점 : 20점)	점 수
총 계		
교육운영 실적관리 상태	전년도 교육운영 실적 제출기한의 적정성 (배점:10점)	
	전산화된 시스템을 통한 교육운영 실적관리의 적정성 (배점:10점)	
평가 취 지		
○ 전년도 교육운영 실적의 제출기한 준수 여부 및 교육운영 실적을 전산화된 시스템으로 관리하여 교육자원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노력을 유도		
주요 착안사항		
※ 교육기관 본사 평가 시 지부 및 출장소 실적 통합 평가		
○ 교육운영 실적관리 상태는 고용노동부 문서접수일, 현장 실적관리 실태를 확인하여 평가		
○ 전년도 교육운영 실적 제출기한(매년 1월 20일)의 적정성은 아래 각각의 등급기준에 따라 점수 산정		
- 실적 제출기한을 준수하고 제출 기한 후 실적 변경을 하지 않은 경우 : 10점		
실적 제출기한을 준수하고 제출 기한 후 실적 변경을 1회 이상 한 경우 : 5점		
실적 제출기한을 초과하거나 제출 기한 후 실적 변경을 3회 이상 한 경우 : 0점		
※ 제출기한은 최종 실적파일이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장에 접수된 일자를 기준으로 확인		
※ '17년은 평가하지 않고 대상기관모두 10점 부여		
○ 전산화된 시스템을 통한 교육운영 실적관리의 적정성은 아래 각각의 등급기준에 따라 점수 산정		
- 교육운영 실적을 안전보건교육 전용의 전산시스템으로 관리하는 경우 : 10점		
교육운영 실적을 엑셀, 한글 등 상용 프로그램으로 관리하는 경우 : 7점		
수기로 작성된 출석부로 관리하는 경우 : 3점		
출석관리를 하지 않는 경우 : 0점		

B. 업무성과

B.3. 고객만족도 (130점)

세부평가 B.3.1	평가기준 (배점 : 130점)	점 수
총 계		
교육이수자 만족도	교육생 만족도 측정결과 (배점:130점)	
평 가 취 지		
○ 교육이수자 만족도 조사를 통해 교육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실시하여 미흡한 사항은 향후 교육기관 운영에 반영토록 유도하여 교육만족도 향상에 기여		
주요 착안사항		
※ 교육기관 본사 평가 시 지부 및 출장소 실적 통합 평가		
○ 교육이수자 만족도는 외부 리서치 전문 업체의 설문조사 결과 보고서를 확인하여 평가		
○ 교육 만족도 측정결과는 100점 만점으로 평가된 만족도 결과를 130점으로 환산하여 적용 (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)		
※ 만족도 측정 결과 90점 → 90점×130% : 117점		

B. 업무성과

B.4. 자체평가 및 개선 노력 (80점)

세부평가 B.4.1	평가기준 (배점 : 40점)	점 수
총 계		
교육프로그램 자체평가 실시 여부	교육생을 통한 의견수렴 방법의 적정성 (배점:40점)	
평 가 취 지		
○ 교육이수자 만족도 조사를 통해 교육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실시하여 미흡한 사항은 향후 교육기관 운영에 반영토록 유도하여 교육만족도 향상에 기여		
주요 착안사항		
○ 교육프로그램 자체평가 실시 여부는 연간교육계획서, 설문조사결과, 설문지 원본 등을 확인하여 평가		
○ 위탁교육을 위해 설치한 지부, 출장소 등이 있을 경우 지부 및 출장소 중의 20% 미만 (소수점 이하 버림)을 임의로 선정(지부 및 출장소가 5개소 미만인 기관은 1개소 선정)하여 방문 평가하고 본사, 지부 및 출장소 각각의 평가 점수를 평균하여 최종 점수로 산정 * 지부 및 출장소가 1개인 경우 2개소 방문(본사 1개소, 지부 및 출장소 1개소)		
○ 교육생을 통한 의견수렴 방법의 적정성은 아래 각각의 세부평가기준 점수(세부 평가 기준별 조건에 부합할 경우 각각의 점수를 부여, 아닐 경우 0점)를 합산하여 산정		
- 자체 평가를 위한 교육생 의견수렴 절차가 문서화 되어 있는 경우 : 15점		
- 연간 교육이수자 중 50% 이상에 대해 설문응답을 받았고 해당 설문결과 실물을 90%이상 보존하는 경우 : 25점		

B. 업무성과

B.4. 자체평가 및 개선 노력 (80점)

세부평가 B.4.2	평가기준 (배점 : 40점)	점 수
총 계		
자체평가에 의한 개선 실적	자체 평가를 통한 개선실적의 적정성 (배점:40점)	
평 가 취 지		
○ 자체평가에 의한 개선실적 평가를 통해 교육품질의 지속적 향상에 기여		
주요 착안사항		
○ 자체평가에 의한 개선 실적은 자체 설문조사 보고서, 자체 개선계획 및 현장실사 결과 등을 확인하여 평가 ○ 위탁교육을 위해 설치한 지부, 출장소 등이 있을 경우 지부 및 출장소 중의 20% 미만 (소수점 이하 버림)을 임의로 선정(지부 및 출장소가 5개소 미만인 기관은 1개소 선정)하여 방문 평가하고 본사, 지부 및 출장소 각각의 평가 점수를 평균하여 최종 점수로 산정 * 지부 및 출장소가 1개인 경우 2개소 방문(본사 1개소, 지부 및 출장소 1개소) ○ 자체 평가를 통한 개선실적의 적정성은 아래 각각의 세부평가기준 점수(세부 평가 기준별 조건에 부합할 경우 각각의 점수를 부여, 아닐 경우 0점)를 합산하여 산정 - 설문조사 결과를 집계하고 미흡한 사항을 도출한 경우 : 10점 - 미흡한 사항 중 60% 이상에 대해 개선계획을 수립한 경우 : 10점 - 개선 계획에 따라 모두 개선한 경우 : 20점		